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병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3452

발의연월일: 2023. 7. 26.

발 의 자: 강병원·홍정민·유정주

오영환 · 고영인 · 정일영

임호선 · 강민정 · 이동주

이해식 · 위성곤 · 권칠승

김영주 · 김교흥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피해자등의 성명·주민등록번호·전화번호 등 신상정보 및 이동경로 파악과 수색·구조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수집 정보, 카드 사용명세등 개인정보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요청할 수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정보 요청의 요건이 '재난 대응'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 정되어 있어, 풍수해가 예상되는 장마철에 재난의 예방·대비를 위해 선제적으로 해당 정보를 요청하는 등 재난의 사전 관리 차원에서 정 보를 활용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에 '재난의 예방·대비'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도 추가하고,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라도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들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74조의3 및 제78조의4).

법률 제 호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 본부장은"을 "행정안전부장관(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가 운 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. 시·도 지사 또는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(제16조제1항에 따른 시 · 도대책본부 또 는 시・군・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 재난의 예방 · 대비와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은"을 "행정안전부장관, 시· 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중 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은"을 "행정안전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"으로 하고.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 분 중 "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은"을 "행정안전부장관, 시 · 도지사 또는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은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"대응"을 "예방·대비·대응"로 하고. 같은 항 제3호 중 "대응"을 "예 방·대비·대응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"대응"을 "예방·대비· 대응"으로 한다.

제78조의4 중 "대응"을 "예방·대비·대응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혀 행

개 정 안

제74조의3(정보 제공 요청 등) ①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 · 신체에 대한 피 해를 입은 사람과 생명 · 신체 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(이하 "재난피해자등"이라 한다)에 대한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중 앙행정기관(그 소속기관 및 책 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)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「공공기관 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, 「전기 통신사업법」 제2조제8호에 따 른 전기통신사업자, 그 밖의 법 인 ·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요청 할 수 있으며, 요청을 받은 자 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74조의3(정보 제공 요청 등) ① 행정안전부장관(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 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, 시 ・도지사 또는 시장・군수・구 청장(제16조제1항에 따른 시ㆍ 도대책본부 또는 시・군・구대 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 재난의 예방・ 대비와-----

1.	2	(생	략)
┰.	⊿.	/ O	-

- ②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 대책본부장은 재난피해자등의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조제8 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, 요청을 받은 자는 「통신비밀보호법」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③ <u>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</u> <u>대책본부장은</u> 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관계

1.・2. (현행과 같음)				
② 행정안전부장관, 시ㆍ도지사				
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				
<u>.</u>				
③ 행정안전부장관, 시ㆍ도지사				
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				

재난관리책임기관·긴급구조기 관·긴급구조지원기관, 그 밖에 재난 대응 관련 업무를 수행하 는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.

- ④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주체에 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한다.
- 1. 재난 <u>대응</u>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
- 2. (생 략)
- 3. 수집된 정보는 이 법에 따른 재난 <u>대응</u>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,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된다는 사실
- 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이 법에 따른 재난 <u>대응</u>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,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.
- ⑥ ~ ⑦ (생 략)

④ <u>행정안전부장관, 시·도지사</u>				
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				
,				
1 <u>예방·대비·대응</u>				
2. (현행과 같음)				
3				
<u>예방·대비·대응</u>				
⑤				
<u>예방·대비·대응</u>				
⑥ ~ ⑦ (형해과 간 은)				

제78조의4(벌칙) 제74조의3제5항	제78조의4(벌칙)
을 위반하여 재난 <u>대응</u> 이외의	
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거나	대송
업무가 종료되었음에도 해당	
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는	
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	
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	